

제425회 국회  
(임시회)

#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5월7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간사 선임의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4)(추가)

## 상정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	3
o 간사(서범수) 인사 .....	3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4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5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4) .....	15

(15시07분 개의)

###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5월 2일 네 분의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이에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네 분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주호영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주호영 위원 이번에 행정안전위원회로 오게 된 주호영 위원입니다.

저는 어쩌다가 6선이 되면서 여러 상임위를 다녔습니다마는 18개 상임위, 특위 중에서 행정안전위원회만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의 사정에 따라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오자마자 인사도 채 하기 전에 참으로 통탄하는 일이 생겨서 내가 이 위원회에 잘못 왔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많이 우울한 사정입니다.

이따가 회의가 진행되면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나머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심히 우려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헌법에 합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면서 한다는 것은 공통 합의이고 다수결이라고 뭐든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깨어지고 있는 모습에 참으로 참담함을 느끼고 우리가 권력이 한창 성하든가 올 때 일들이 돌아서서 참으로 얼굴 들기 부끄러운 일들을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한 분 한 분의 결정이나 행위가 역사에 남고 평가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서범수 위원 반갑습니다.

서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인사말씀 드리기도 전에 이렇게 좀 참담한 말씀, 그리고 참담함을 느끼고 좀 호된 신고식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제가 첫 상임위가 행안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 출신이라서 행안위에 많은 애정도 있고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친정으로 오는 기분으로 왔는데 오늘 첫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복합적으로 느껴집니다. 여하튼 제가 친정이라고 생각했던 행안위에 왔으니 우리 야당이라든지 민주당 위원님과 같이, 다른 위원님과 같이 서로 협의를 하면서 국민을 위한 행안위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와서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행안위 있을 때 같이 싸우기도 하고 같이 뜻을 맞춰서 활동을 하신 위원님들도 계셔서 마음이 든든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서로 협의해 가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진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고동진입니다.

아까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라서 좀 더 밝은 모습으로 행안위에 임하는 자세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날부터 좀 분위기가 무거운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발언할 기회를 얻어서 제가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따로 또 드리기로 하고 제가 그렇게 잘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깊게 고민하고 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인사말씀을 하실 차례입니다마는 안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에 출석하셔서 기회가 되시면 인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네 분 위원님들이 새롭게 보임되어 가지고 시작하는 첫 출발점에서 서로 격앙되고 굉장히 대립되는 안건을 가지고 충돌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맞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든 야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더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헌법이 유린되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치도 사법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 속에서 박수민 위원께서 좌석에 착석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어어서 오신 소감 한 말씀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수민 위원 반갑습니다.

박수민 위원입니다.

저는 과거에 공직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 공직사회 그리고 공공 부문이 조금 더 국민들을 위해서 효과적이고 생산적이고 지혜롭게 일을 해야만 지금 민생경제 문제가 풀리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들이 해결되어 갈 수 있다. 일하는 공직사회, 생산적인 공직사회, 해법과 해결을 해내는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런 가장 중심적 취지로 행안위에 오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분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위원님들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서로를 살피면서 건강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1. 간사 선임의 건

(15시14분)

○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셨던 조은희 간사님께서 사임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간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국회법 50조는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범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범수 위원님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범수 간사님으로부터 선임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 간사(서범수) 인사

(15시15분)

○ 서범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간사로 선임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올려야 될지 아니면 제가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좀 부담감을 가지면서 인사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안위 간사로 지정이 되어서 여기 오면서 생각은 최근에 여러 가지 국회에서의 상황들을 보면 관례가 무시되고 상호 존중의 정신, 합의와 협치의 정신이 많이 훼손되고 있고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행안위에서 만큼은 서로 당끼리 협의를 해서 국민들께 정말로 희망을 주는 행안위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포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간사에 선임되기 전부터 벌써 이렇게 빼걱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상임위를 잘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부담

이 생깁니다. 지금 관세전쟁이라든지 지역에 가면 민생이 많이들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판에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께 싸우는 모습보다는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협의하고 합의해서 국민들께 정말로 희망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게 우리 정치인의 지금 현재의 희망이고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오늘 처음부터 빼걱댔지만 갈수록 우리 행안위만큼은 서로 좋은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께 보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상임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신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윤건영 간사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맙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소감과 부탁의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님 그리고 또 함께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히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15시18분)

○위원장 신정훈 오늘 공지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현일 위원님의 동의와 모경종 위원님의 찬성으로 법률안 상정 및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국회법 제77조 및 71조에 따라서 토론을 거치지 않고 표결합니다. 이에 같은 조에 따라서 의안번호 22103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갈리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이달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시지요.

○위원장 신정훈 예, 의사진행발언이 계신 분 손 한번 들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세 분 정도만 하실까요, 다 하실까요?

○이만희 위원 간단간단하게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간단간단히라도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이니까 한 2분씩만 하실까요?

○서범수 위원 3분 하시지요.

○위원장 신정훈 3분 하실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고동진 위원 위원장님 대체토론 할 기회도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예, 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은 대체토론대로 하시고요. 의사진행발언은 대체토론 과정에서 하실 분도 있

고 그렇게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분 정도……

박수민 위원님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박수민 위원** 의안 긴급상정 하려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뭔지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위원 검토는 왜 생략된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셔야 할 것이고요.

이 법안이 굉장히 예민한 법안인데 어떠한 토론도 없이, 전문위원 검토도 없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추진하셔도 되겠습니까? 이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면죄법인데 이걸 이 시기에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통과시키면서 국회의원들이 토론도 안 하고 전문위원 검토도 없이,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이유를 밝혀 주시지 않으면 이 법안 중지돼야 되고.

다수결은 중립적인 장치입니다. 좋은 목적에 쓰면 좋은 결과를 낼 것이고 나쁜 목적에 쓰면 나쁜 결과를냅니다. 국회법에 다수결이 있다고 해서 다수결이 목적과 내용을 토론하지 않고 결과와 후과를 토론하지 않고 다수결로 하신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어떤 이유에서 오늘 일방적으로 지금 이렇게 신속하게 하시는 것인지, 전문위원 검토는 왜 생략하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행위’를 빼면 그러면 거짓 행위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공직선거법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토론도 없이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것은 이재명 대표 면죄를 위한 일방적인 시작인데 저희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조금 이따가 이 법안이 상정되면서 검토보고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만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이번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거대 야당의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국회 운영의 행태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번은 사실 도를 좀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큰 하자가 있을뿐더러 또 내용적으로도 심각한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에 대한 날치기 처리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그동안 민주당에서 우리 여당에 대한 여러 가지 고발한 내용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본인이 앞장서서 궤변을 펴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한 내용도 바로 민주당이 작성한 고발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당 원내대표를 향해서 한 거지요.

정작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

과 대법관을 탄핵하겠다고 나서고 이것이 모자라서 법마저 바꾸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공직 적격성에 대해서는 후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아닌 걸 아니라고 한 사법부가 잘못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골프 쳐 놓고 사진 조작됐다고 그러고 백현동 부지의 용도 용량을 100%에서 500%로 4단계나 상향시킨 명백한 특혜를 저질러 놓고도 국토부 압박이었다고 했던 명백한 거짓 말이 판결문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해도 이재명만 살리면 된다는 식의 이런 행태는 고쳐야 합니다.

이번처럼 있는 죄를 없애는 법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없는 죄도 만드는 법도 만들어서, 없는 죄도 있는 것으로 만드는 법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독재와 국민의 겁박에 나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세력이 집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장 명백하게 명료하게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위인설법, 입법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땅의 모든 우리 민주주의 세력들이 뭉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회가 넘는 탄핵, 예산 칼질, 행정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제는 사법부마저 민주당의 발 아래 두고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자신에게 유죄를 내리는 법원에 대해서 역으로 거대 기득권이라고 선동하는 이재명 후보야말로 유일무이의 절대 기득권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이 될 이런 악법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이 시점에 통과되는 우가 없도록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모경종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우선 여당 위원님들 발언이 있었고요. 또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진행 과정에서 민주당 위원님들 발언도 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순서를 좀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경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의 모경종입니다.

지금은 의사진행발언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당, 야당이 없어진 지가 꽤 됐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위원님들만 계신 게 이곳 행안위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짚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사진행발언 중에는 말 그대로 의사진행에 관한 내용만 이야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어떤 안건이 올라오는지 그리고 그 안건에 대해서 어떤 토론을 하는지는 당연히 위원님들께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고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의사진행발언을 빌려서 의견 제시하는 것

도 좋지만 나아가서 본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실제 내용과 다른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을 빌려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뭐 골프를 쳤는데도 사진 조작이 아니다, 맞다 이거 관련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백현동 4단계 상향과 국토부 압박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의사진행발언 내용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골프를 친 사건에 대해서 사진을 확대해서 그날 골프를 친 사진이냐고 물어봤고 그 부분이 아닌 게 명확하게 법원에서도 밝혀진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마치 짜깁기를 해서 진짜 조작이, 허위 발언을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분명히 내려온 공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판단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진짜 압박이 없었는데 또는 국토부의 아무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허위로 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의사진행발언을 빌려서 할 내용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중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의사진행과 관련된 부분만 모경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한탄스럽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공무원 생활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위원회에서 또 여럿 뵙고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하는 그걸 쭉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자체를 사실 기자들이 먼저 압니다. 기자들이 먼저 와서, ‘위원님, 내일 위원회 개최한다면요?’ 이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저희 위원들은,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도 뭐 그리 큰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위원들하고는 아무런 사전 없이, 특히 간사님들하고는 아무런 사전 없이 몇 시간 전에 통보되느냐? 하루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건 올릴 거다. 그것도 공식적으로는 아침까지도 이 안건이 올라오는지, 공직선거법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와서 안건을 심의한다? 사실 저희들이 위원장님 부하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번에 상정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말 중요한 법안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게 정개특위 열어 가지고서 특위에서도 논의되고 공청회도 하고 해야 되는 법안입니다. 이런 중요한 법안을……

그리고 이게…… 죄송합니다, 모 위원님, 이 말씀만 드릴게요. 특정 대통령후보한테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닙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위탁선거까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법률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포함되는 모든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렇게 이 법률이 적용 범위가 넓고.

‘행위’라는 표현을 삭제한다 그러면 선거를 행위에 관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건지 이걸 어떻게…… 그러면 위원장님, 백번 양보해서 위원장님처럼 이게 구체성이 없고 명확성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갈 것인지를 논의해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아무런 절차나 과정 없이 그냥 삭제해서 개정안 올리는 거 이런 거 일방적으

로 저는 도저히 상정하는 거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상정을 중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먼저 채현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호영 부의장님 발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달희 위원님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저는 지난해 11월에 선거운동 자유를 보장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를 국민의힘 의원님과 함께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그 당시 토론회에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참석했고요. 공선법 개정 취지에 공감을 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님께서 축사를 했는데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최소한의 규제만을 유지하고 강제적인 외부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내부 규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강조한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제, 원칙적으로 규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그러한 결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학계에서도 지속적인 개정 논의가 있었습니다. 유권자와 후보자의 자유로운 정치 표현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 모호함을 틈타서 정치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하고 또 사법부가 선거에 기습적으로 개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불가피한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오늘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재판기일을 선거 이후로 변경한 것은 균등한 선거 기회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부가 정치 전면에 나서 가지고 국민의 신성한 주권 행위인 선거권을 박탈하려 한 사법 쿠데타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가 가만히 있으며 팔짱 끼고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바로잡고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부디 오늘 공선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되어 앞으로 모든 공직선거에서 검찰과 사법부 권력의 무도한 정치 개입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금 의사절차 변경 동의가 들어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니까 5월 2일 날 발효가 됐어요. 지금 5일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선거법은 정개특위 같은 데서 수차례 논의를 해서 합의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이나 유권자 단체 이런 데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결정해 온 것이 관례이고 그것이 또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채 5월 2일 날 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조차 오늘 회의 전에도 만들어지지 않은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것 밀어붙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여기 법조인은 아시겠지만 형법 1조에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이 개정되면 재판 시 법률에 의해서 처벌하는 걸로 해서 어느 분의 유죄판결을 모두 면소판결 하려고 이렇게 거의 처분에 가까운 법률을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용에 들어갔을 때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절차적으로 간사들끼리 합의도 되지 않은 채 더구나 오늘 새로 사보임되고 간사도 선정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4일 만에 이런 법을 훌쩍 만들어서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더 숙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더 듣고 해야 됩니다. 오늘 의사진행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행위에 관해서 거짓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처벌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무슨 명확성의 원칙이 없다고 하는데 판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미 결론도 나 있어요, 나 있고. 이 행위를 빼고 나면 온갖 거짓말을 다 처벌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행위에 관해서. 과연 이런 무법선거운동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더구나 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비방을 제한하고자 다수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발의했어요. 올 1월에는 가짜뉴스 신고를 받는다고 민주파출소까지 개설했어요. 이 법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만들어도 처벌하지 않는 법인데 더구나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그 사람의 과거 행위나 발언, 이것 전부 거짓말이어도 그냥 다 넘어가자는 겁니다. 이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건데……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왜 이 법을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지는 국민들이 다 아실 것 같고 저는 이런 법안을 오늘 한다고 하길래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종교는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라는 그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제가 여당 할 때 혹은 다수당일 때 힘으로 밀어붙일 때 부끄러운 자리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거는 아닙니다’ 이야기는 못 했지만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덧났습니다. 이게 상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힘 가질 때 함부로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를 술하게 봤습니다. 부디 자중하시고 더 심의하고 더 논의해서 제대로 된 법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 ○이달희 위원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법률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발의 후 5일 만에 상정되면서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숙려와 심사의 기본 절차가 무시됐습니다. 여야 간 간사 협의는 물론 숙려기간도, 법안소위원회의 심의도 없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위원들에게 미리 제공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개정안조차도 오늘 오전에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회의 입법 절차의 모든 기본 단계를 생략하고 강행하는 것은 국회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며 국민 앞에 부끄러운 입법 행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개정안이 제출된 정치적 맥락입니다.

5월 1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개정안은 판결 바로 다음 날 5월 2일에 이 법이 발의되었고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첫 공판이 5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6월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선고가 유예, 연기가 됐습니다. 면추십시오. 정말 이 법 정치적인 맥락을 볼 때 민주당 위원님,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정황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 무죄를 위한 입법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개정안은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구성요건 자체를 삭제하는 면소 입법 아닙니까? 소급적으로 무죄 판단받을 마침표를 찍는 법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살려 갑시다. 이 법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할 때 비로소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고 희망을 찾지 않겠습니까? 정당성을 해치는 입법, 우리 이 자리에서 멈춥시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개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충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이 있으셨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일부 마음에 수긍이 가는 바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 법안 상정은 조각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3일 이후에 대한민국은 대단히 비상한 상황이고요. 그 비상한 상황을 보는 진영에 따라서 각기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수괴라고 하는 사람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내란의 종범들은 다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법치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되고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그 법치의 수호자로서 사법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의 사법부의 절차와 또 사법부의 판단과 기준이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의심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런 비상한 상황, 사법부마저도 정치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고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 내용에서 저도 왜 양심이 있는데 부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과정 과정을 눈감으면서 역시 이 과정에 대한 돌팔매질만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부끄럽습니다.

지금 정치가 사법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이라든가 수백 번의 부당한, 부당하다고 느끼는 판결도 존중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있고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명명백백한 국민의 일반상식과 기존의 준례를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위기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오늘 아침에 고등법원의 판결 기일이 변경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전히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재판대에 세우겠다 그리고 선거 날인 6월 3일, 소위 말해서 후보를 재판장에 출석요구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사법행정의 질서는 어떤 이유로도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당을 달리하는 위원님들의 다 같은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 과정을 가지고 고민

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릴 수가 없고 상대방의 이야기만 계속, 상대방을 위한 돌팔매질만 계속하는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사법부가 명료하게 사법질서 스스로의 어떤 정치 개입,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고 선거에 지금 출마한 당사자를 선거기간 내에 이렇게 출석요구하고 재판장에 세우겠다 하는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이 또 입법부가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숙려기간이라든가 절차를 다 밟지 못한 것들은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큰 범죄적 행위라고 생각되는 대법원에 의한, 사법부에 의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또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왜곡 문제들이 해소되는 문제를 절대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대체토론 과정이라든가 법사위 과정에서 또 본회의가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 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반영되고 또 개진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위원님들의 이 의사진행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범수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호영 위원 위원장님,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에 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의사진행발언 한 번 정도 하셨으니까요……

○주호영 위원 아닙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 때문에 생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것은 충분히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주호영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시간 제한 없이 말씀하셨는데 그것 국민들이 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발언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됩니다.

○윤건영 위원 대체토론할 때 또 하시면 되지요.

○주호영 위원 저도 그 발언에 관한 의사진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정훈 대체토론하시지요. 이 이후에 충분히 발언할 기회가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진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서범수 위원 두 사람은 드리세요, 위원장님.

○박수민 위원 저는 제 시간 다 안 썼습니다.

○한병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은 끝내고 토론으로 넘기시지요.

○주호영 위원 위원장이 무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언 내용도 마음대로하시는 건 아닙니다. 방금하신 말씀에 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저도 위원님들 이야기 일일이 다 반박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는 제가 진행자로서 최소한의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주호영 위원 저도 최소한의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 2분 주시면 2분 내에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진행하시고요. 필요하면 대체토론에서 하시면 되지요.

○**주호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시면 원만한 진행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하지 않으신 분만 제가 한 분 더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아닙니다. 발언 기회가,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맞으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의사진행에 협조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막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게 되면……

○**주호영 위원** 아니, 무슨 법원의 판결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위원회 의견도 아닌데 왜 우리 위원회 의견처럼 말씀하셔 가지고 판결을 훼손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기회를 주세요.

○**윤건영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는 거에 조금 협조를 해 주시지요.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이 조금 오버를 하셨잖아요, 지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여기 지금 법원 출신이 저밖에 없습니다. 법원을 펌훼하는 발언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위원장님, 상임위 운영 권한은 위원장님께 있는 거고요. 의사진행발언 드렸으면 정리해 주시지요. 야당 위원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주호영 위원** 아니, 한 위원님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할 게 있어서 하는 겁니다.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간사님이 정리해서 한 말씀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아닙니다. 저 꼭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안 하면 나는 가서 기자회견이라도 하겠습니다. 이 회의가 있는데 왜 발언까지 제한합니까?

○**위원장 신정훈** 서범수 간사님 한 말씀 하십시오.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너무 도를 넘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냐.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히 삼권분립이 확립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부에서 사법부의 행정이 불법이고 무질서하고 잘못됐다고 단정을 하시는 근거가 뭔지를 나는 모르겠고요. 이게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정치화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모든 걸 위원장님의 의중을,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행안위의 의사로 표현을 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민, 국민’ 하시는데 국민도 여러 가지 국민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국민도 있을 거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 국민을 전체 뚁뚱그려서 국민께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과연 옳은 말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하실 때는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 주십사 부탁을 제가 간사 입장에서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참작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저 여기 처음 왔습니다.

○**이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주십시오, 2분이라도 주세요.

○**모경종 위원** 위원님 하셨잖아요.

- 주호영 위원** 제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 위원장 신정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가지고……
- 주호영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의 발언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사유가 생긴 겁니다.
- 박수민 위원** 이럴 시간에 주십시오.
- 위원장 신정훈** 자, 좋습니다. 그러면 1분만 하십시오.
- 주호영 위원** 1분이 됩니까, 또?
- 위원장 신정훈** 충분합니다.
- 주호영 위원** 저도 진행 많이 해 봤습니다. 할 이야기는 하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신정훈** 아니, 그 정도로 하시지요.
- 주호영 위원** 국회라는 게 할 말을 듣는 데 아닙니까?
-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 주호영 위원** ‘작금의 사법부 절차에 관해서’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셨는데……
- 이달희 위원** 마이크 주세요,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훈** 드렸잖아요. 드리고 있잖아요.
-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이 길게 말씀하셔 갖고……
- 윤건영 위원** 진행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신정훈** 지금 충분히 드렸잖아요.
- 주호영 위원** 잠깐만 계세요, 제가 발언할게요. 시간 주십시오.
- 윤건영 위원** 진행을 다 하시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위원장이 하는 거지, 진행은.
- 주호영 위원** 위원장이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위원장이 진행한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윤건영 위원** 위원장이 진행을 마음대로 못 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 박수민 위원** 이럴 시간에 시간 주시지요.
- 주호영 위원** 시간 주시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1분 드리세요.
- 주호영 위원** 작금의 사법부 절차에 관해서 죽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인식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이 위원회가 이렇게 속기록에 남겨도 되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삼권분립, 법치주의가 됩니까?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주고 그 판단을 다 따르자는 것 아닙니까. 국회 의석 수가 많다고 그 위에 다시 판단하면서 잘됐는지 잘못 됐는지 하는 자체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우리 약속에 분쟁이 생기면 법원이 해결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0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절차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절차 문제 따져 볼까요? 고등법원에서 유죄 났으면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결 확정되면 출마 자격도 없습니다. 고등법원 판결이 문제 아닌가요? 1심 재판장 1년 6개월이나 재판 미루다가 재판할 때 되어 가지고 휴가 갔습니다. 어느 게 문제입니까? 그런데 왜 사법부 재판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난리 쳐요?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고 있어요?

사과하십시오. 위원장님 사과하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저는 사과할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윤건영 위원 사과할 일 아닙니다. 이게 무슨 사과……

○주호영 위원 왜 사법부를 근거없이 폄훼하고 잘못한 판사에 대해서는 비판 한마디 없고……

○위원장 신정훈 좋습니다. 좋습니다.

○주호영 위원 자기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판사라고 함부로 이렇게 대법원을 훼손하고…… 솟자 많다고 이렇게 정말 할 거요!

○모경종 위원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법원만 있습니까, 부의장님? 고등법원은 뭐라고 하시면서 대법원 판결은 맞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만희 위원 조용히 합시다!

○모경종 위원 사법부는 이야기하시면서 고등법원은 그러면 왜 그렇게 공격하십니까?

○이상식 위원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사법부 비판 못 합니까?

○위원장 신정훈 됐습니다. 이야기 이제 충분히……

○주호영 위원 당신들 유리한 판결은 전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형편없는 재판 한 거는 다 감싸고 돌다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모경종 위원 나경원 의원 재판이나 먼저 논평하시고 말씀하십시오, 부의장님!

○용혜인 위원 국민의힘은 그래서 헌법재판소 공격했습니까?

○위성곤 위원 36일 만에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36일 만에 그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이상식 위원 아니, 이재명이 아니면 그렇게 했습니까?

○주호영 위원 1년 6개월이나 미룰 수가 있어요? 재판을 1년 6개월이나 미룰 수가 있어요?

○용혜인 위원 그렇게 합디다. 나경원 의원 지금 몇 년째 1심 하고 있습니까?

○윤건영 위원 나경원 의원은 5년을 미뤘어요, 지금!

○모경종 위원 나경원 의원 5년 미루고 있는 재판부터 평가를 하시지요.

○위원장 신정훈 존경하는 위원님들, 주호영……

○주호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다 힘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이상식 위원 우리가 힘이 뭐 있습니까?

○윤건영 위원 뭘 미뤘다고 합니까?

○위원장 신정훈 주호영……

○윤건영 위원 이제 진행하시지요.

○위성곤 위원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신정훈 자, 진행할게요.

○이만희 위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상이냐고!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모경종 위원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신정훈 진행할게요. 충분히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인식이 그러하기 때문에 또 민주당의 위원님들의 판단이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문제가 풀리지는 않습

니다. 그 문제는 오로지 대법관의 판결할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가 해야 될 권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사법부의 모든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이 삼권분립이다 이렇게 이야기……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또 그 결론을 내지 마세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그만 좀 해요.

○조승환 위원 위인설법을 한다, 사법부를 위인설법이라 하시고 내로남불을 하신다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위원장 신정훈 저는 주호영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주호영 위원님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용혜인 위원 위원장님, 그만하고 진행해 주십시오. 더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경종 위원 위원장님, 진행해 주세요.

○용혜인 위원 더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1분 주십시오. 아까 안 썼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위원님들 상호간에 이야기들은 충분히 의견을 들으셨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같리고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계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적위원 22인 중 출석 19인, 찬성 13인, 반대 6인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5시53분)

○위원장 신정훈 방금 변경된 의사일정 제2항은 국회법 제59조 1호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의 공정성 보장에 직결되는 개정 사항을 담고 있어서 조속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정 사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 단서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4)

(15시55분)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법률안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하신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정부 측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덟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우선 서범수 위원님부터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회의 소집도 하시더니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발언 시간도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 신정훈** 발언시간 충분히 드렸잖아요.

○**서범수 위원** 아니, 5분을 딱 맞춰서…… 5분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처음 듣습니다, 지금.

○**위원장 신정훈** 예?

○**서범수 위원** 5분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다고요. 이런 시간에 대해서……

○**위원장 신정훈**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대체토론의 일반적인 관행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것 관행이 어디 있어요? 관행을 전부 무시하는 지금 이 상임위에서 이것은 관행을 따라갑니까? 서로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 신정훈** 대체토론을 지금까지 죽 그렇게 해 왔으니까요 그렇게 존중해 주시지요.

○**서범수 위원** 사무총장님은 나오셨고 수석전문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법률안 회부는 15일 경과 후에 상정 가능하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예.

○**서범수 위원** 이 법이 5월 2일 날 발의됐지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자면 이게 상정하면 안 되지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이것은……

○**서범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다. 그렇지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라면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여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는 시나리오에……

○**서범수 위원** 시나리오라니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위원장님께서 지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서법수 위원 말하세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뭡니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의 공정성 보장에 직결되는 개정 사항을 담고 있어 조속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법수 위원 그게 긴급합니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여기에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는 정말 이것은…… 이 조항 자체가 추상성을 띠고 있고요.

○서법수 위원 아니, 긴급한 것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긴급하냐고요, 지금.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긴급한 것 여부는……

○서법수 위원 누구를 위해서 긴급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불가피한 거예요?

○위성곤 위원 긴급함의 문제를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어떻게 전문위원이 판단합니까?

○서법수 위원 아니, 전문위원한테 내가 참고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전문가니까……

○위성곤 위원 전문위원은 법률적 검토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것이 긴급한지 긴급하지 않은지는 전문위원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에요.

○서법수 위원 잠시만요. 지금 내 발언 하잖아요.

○위성곤 위원 왜 그걸 수석실 거기다 질문하세요? 저한테 질문하세요, 왜 긴급한 건지에 대해서.

○서법수 위원 아니요. 아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를 했을 거잖아요. 시간 줄이세요. 스탑.

아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했지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예, 검토했습니다.

○서법수 위원 검토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뭐냐고요. 나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이 부분에 지금 59조를 위원님께서 보시면 원칙과 예외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조항인 단서조항에……

○서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라니까요. 누구한테 긴급하고 불가피하냐고.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답을 그렇게 강요하시면 안 되지요.

○이해식 위원 아니, 유도하는 질문 하지 말아요. 그냥 본인이 답변을 하세요!

○서법수 위원 아니, 내가 묻는데 왜 내가 답변을 해요?

○이해식 위원 왜 전문위원한테 그래요?

○서법수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용혜인 위원 아니, 긴급성 판단은 국회가 하는 것 아닙니까?

○서법수 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

○이해식 위원 뻔한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를 주장하세요!

○서범수 위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좋다, 전문위원 그것은 빼고. 제58조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언제 줬어요, 우리한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이 부분은 지금 의사일정이 여기……

○서범수 위원 언제 줬어요, 우리한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오늘 오전으로……

○서범수 위원 그러면 48시간 전 아니지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예, 아니지요.

○서범수 위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때 특별한 사정이 뭐예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이건 의사일정이 변경이 된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즉 의사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드릴 수는 없는 거지요.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앞엣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앞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의사일정이 바뀌었고 그래서 48시간 이전까지 이 검토보고서를 못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이게 뭐냐고요.

○모경종 위원 그것을 전문위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지요.

○정춘생 위원 그걸 왜 전문위원한테 하십니까? 항의하시려면 위원장하고 간사한테 항의하세요! 왜 전문위원한테 그립니까, 실무자한테?

○서범수 위원 아니, 전문위원 연관이 되니까 내가 묻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모경종 위원 전문위원은 의사일정이 변경됐으니까 하는 거고.

○서범수 위원 그다음에요 선관위 사무총장님 나오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서범수 위원 사무총장님은 이 법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개정하는 데 대해서? 어떻습니까?

자, 이 이야기지요. 행위를 빼면 대놓고 거짓말을 해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입법에 대한 부분……

○서범수 위원 그런데 선관위의 입장은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러니까 입법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선관위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서범수 위원 아니, 선관위 입장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선관위 입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선관위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2000년도에 개정돼서 행위라는 개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서범수 위원 아니, 다른 말 말고 지금 예스냐 노냐. 선관위 입장에서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서범수 위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벌써 드러누웠어요, 선관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저희들한테 축조 해설 해석을 의뢰했을 때는 전면적으로 이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이 입법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니까 선관위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어떤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다만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지금 이 축조 해설뿐만 아니라 250 조 조문을 손대는 경우에 어떠한 선거관리의 문제점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단순히 입법정책적인 결정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뒤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는 또 행위 부분만을 삭제하겠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바가 없고요. 이 부분은.....

○**서범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문제지요.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서범수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대체로론에 앞서서 입법의 신속성을 따지는 건 전문위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피감기관인 선관위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국회가 따져야 됩니다. 이게 신속하게 처리해서 국민을 위해서 입법이 필요한 건지는 우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따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관위 사무총장께 묻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한 이 조항, 행위를 둘러싼 이 조항이 앞서 말씀하셨던 게 2000년도에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한 25년 됐지 않습니까? 논란이 꽤 있었던 조항은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학계에서 그런 위현적인.....

○**윤건영 위원**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맞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럼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 정도가 아니라 공선법의 아주 대표적인 논란 지점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 논란을 설명해 볼게요. 표현의 자유라든지 명확성의 원칙을 전혀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고 하면 행위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행위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가지고 쉽

게 말하면 검찰이 검찰 마음대로 행위의 개념을 정해서 선거 출마자라든지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서 옳아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와 걱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즉 현행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서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발언이라든지 단순 실수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엮어서 당선무효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에서나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된다라고 논란이 벌어져 왔던 겁니다. 그 말씀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총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행위에 대한 범위, 처벌 대상의 범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250조 1항에 대한 부분입니까?

○윤건영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즉 나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게 지금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다만 지금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윤건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행위의 범위가 지금 법 기술적으로나 법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냐라는 걸 여쭙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법률 규정에 대한 해석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완 같은……

○윤건영 위원 총장님 죄송한데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법이 미비하거나 문제가 있거나라고 하면 그 미비점을 보완해 내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우리 행안위가 공선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이 법 조항과 관련해서는 오랜 기간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위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호한 규정들로 인해서 해소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여쭐 텐데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과잉 처벌한다는 문제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잘못된 잣대와 기준에 따라서 검찰 마음대로, 엇장수 마음대로 표현의 자유를 속박한다? 있을 수 없는 문제이지요.

저는 그래서 공선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심도 있는 토론을 하지만 검토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총장님께 제가 별도의 의견을 좀 여쭐 텐데요.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국회에 저희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총장님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선거의 입후보자에게는 예를 들어서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접해야 되는 선거운동의 활동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선거운동 기간 중에요?

○윤건영 위원 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가능합니다.
- **윤건영 위원** 만약에 사법부가 선거운동 기간 내에 재판을 계속 잡는다 그러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런 각도는, 그런 각도에서 있을 수는 있는데……
- **윤건영 위원**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역으로 여쭈어볼게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닙니다. 이게……
- **윤건영 위원**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사법부가 법원에서 재판을 선거운동 기간에 잡았던 사례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 **이달희 위원** 그런 후보가 없었지요.
- **윤건영 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합니다.  
어떻습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히 짧게 돼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의 경우에도……
- **윤건영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십시오. 선거운동 기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국회의원인데 제 총선 기간 14일 동안에 재판에서 법원이 저를 부르는 경우가 왕왕 있었나 아니면 없었나 이걸 총장님의 제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 **윤건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예 없었어요. 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선택,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는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제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사법부 행태는 그게……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이상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법적 절차에 따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보면 강행규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기는 한데……
- **윤건영 위원** 아니, 법적 절차가 아니라 총장님한테 제가 구하는 거는요 선거에 대한 공정한 관리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재판장 입장에서는 진행을 했었을 것이고요.
- **정춘생 위원** 아니지요. 헌법의 선거관리 규정에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 돼 있어요. 헌법 116조 보세요, 헌법 116조!
- **윤건영 위원** 총장님, 그게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답변 끊어 주십시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재판부가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을 선행시켜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서범수 위원** 선거…… 죄를 저질렀잖아요.
- 박정현 위원**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 서범수 위원** 재판 받고 있으면 죄를 저지른 거지, 뭐!
- 박정현 위원** 그러면 윤석열도 죄지었지요. 맞지요?
- 서범수 위원** 그래서 파면됐잖아요, 그래. 파면됐잖아요!
- 박정현 위원** 파면은 됐지만 지금 형사법 소송을 받고 있잖아요.
- 서범수 위원**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래. 뭐라 하나, 그걸 가지고……
-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왜 윤석열은 그렇게 싸고돕니까?
- 윤건영 위원** 위원님들, 제 질의 하는데 왜 자꾸 토를 달고 그러십니까?  
.....

○**위원장 신정훈**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이나 토론 과정에는 가급적이면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왜 제가 질의할 때는 그 말씀 안 하시고……

○**위원장 신정훈** 놓쳤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최소한 대체토론이나 본인의 진행 발언, 주질의 과정에서는 해당 위원님들의 발언을 철저히 존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사무총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구성요건의 기준을 예시로 두고 있는데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이런 건 선거 과정에서 공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들로 대부분 걸려지고 쉽게 검증도 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후보자 본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행한 발언 또는 행동 이런 것들이 허위사실이 되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을 두어서 검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언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행위 기준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무총장님 의견은 어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공직선거법 그 부분이 2000년에 개정된 이유가 여러 가지로 지금 적혀 있는 부분이 예시적인 것이냐 열거적인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특정해서 명시된 것 이외에는 즉 열거주의를 선택하다 보니까 특정적으로 열거된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한 거짓말을 처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행위’라는 개념을 국회에서 개정 입법으로 넣게 된 것입니다.

○**고동진 위원** 그래서 현행법에도 행위라고 하는 법률적 기준이 자구로, 명시적으로 저는 일부 좀 불분명한 건 있기 때문에 그게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행위’라는 문구가 없으면 후보자가 어디까지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그 대체 기준이 뭐냐, 저는 더욱 애매모호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나는 A를 B라고 생각한다, 이건 의견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판단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A는 분명히 B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게 내가 A는 B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관계로 단정 지어서 말하면 그것은 허위사실의 판단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발언을 함으로써 행위를 허위사실공표죄

의 판단 기준으로 하는 게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행위 기준이 만약에 빼져 버리면 A는 C가 팩트인데 A를 B라고 거짓말을 이야기해도 발언이라고 하는 행위 기준이 없어져서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당선될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발언들이 난무할 수가 있고 이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법 개정은 절대로 저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사무총장께 질문을 한번 드려 보면 저는 오늘 오전에 행위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관련 진술 또는 발언을 포함해서’ 이걸로 해서 법 발의를 했어요. 25년 동안, 아까 민주당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위에 대해서 ‘불분명한 것이 있고 범위가 불명확하다. 그래서 행위를 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이게 관련 진술 또는 발언까지를 포함하는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한 진술과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사무총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한번 봐 주시고 좀 더 어떤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이런 것을 어떻게 입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제가 오전에 입법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위원장님 입장은 이해하지만 민주당에서 이걸 민주당안으로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오늘 법안 발의한 것을 병합심사를 해 주시면 어떤가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만약에 제가 오늘 오전에 발의한 법안이 무시가 되고 그냥 민주당안으로만 진행된다면 또 입법 독재라고 하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다음은, 잠깐만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주호영 위원님 아까 전에 손 안 드셨는데 또 드셨습니까?

그러면 용혜인 위원님 계신데 먼저 박수민 위원님, 한 두 분 더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이어서……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혹시 민주당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중에서 위원장님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사법부의 정치화가 심각하다’ 이 말을 제 기억에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일제히 민주당이 그 얘기를 꺼내신 것 같습니다. 법원에 의한 선거 개입, 정치 개입 이걸 일제히 쏟아 내시는데.

오늘 고검이 이재명 대표 재판을 6월 13일 한 달 연기했습니다, 한 달 정도. 그래서 오늘 이 안건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법의 정치화 우려 때문에 이 안건 폭넓게 봐야

된다 그러면서 상정시켰는데 민주당이 지적하는 선거 개입, 정치 개입에 대해서 고법이 한 달 미뤘다니까요.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제 그 명분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로 있는데 거리를 활보한다……

저희 당은 시종일관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 반대한 적도 없고 그것은 반드시 권한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시작해야 된다라고 시종일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수처한테 가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하면서 구속영장이 취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사 과정의 문제이고 필요하면 구속영장의 문제이지 이 공직선거법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런 두 가지 명분 때문에 이것을 상정하신다 하는데 연계점이 전혀 없습니다.

선관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혀위사실유포에서 ‘행위’를 빼겠다는 게 이 법의 개정안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나쁜 행위를 하고 나는 그 행위를 안 했다 할 때 이 행위 조항이 없어지면 처벌 가능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 점 때문에 제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수민 위원** 나쁜 행위에는 사기·폭행·살인·갑질·인권침해 등등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처벌 가능합니까, 행위라는 게 빼지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다만 지금 개정안을 보면 당선 목적 그다음에 낙선 목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 250조 제1항 부분에 대해서는 불명확성뿐만 아니라 과잉 입법 이런 부분들에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무조건 풀어 줄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 않나 싶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수민 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기의 행위를 한 사람이 당선을 목적으로 ‘나는 사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을 때 오늘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처벌 가능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처벌 가능하지 않고 생각됩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기·살인·폭력·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선관위 입장이 유권해석,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법원을 통해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행위 자체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행위까지 지금 처벌조항으로 넣었던 것은 후보자의 전인격적인 평가의 요소로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냐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그 판단 요소로 작동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박수민 위원** 신중한 의견 검토 필요하다고 주신 내용의 뜻은 나쁜 행위, 예를 들어서 사기·폭행·절도·인권침해 행위를 했을 때 거짓말을 해도 오늘 개정안이 통과되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행위라는 조항이 모호해서, 범위가 너무 넓어서 검찰이 이것을 이현령비현령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지점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이 문제라면 행위의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하는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 의견도 고려해 볼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민 위원** 오늘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법안 통과되면 나쁜 행위, 거짓말 해도 저희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위가 모호하면 그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이 법안 절대 통과되면 안 되고 이 법안이 올라왔다는 자체에 대해서 열매감을 느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위원회에 대통령실에 근무하셨던 분, 경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찰, 국군장교 등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법을 통과시키시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안타깝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대통령선거를 한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행위를 이렇게 시급하게 열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일은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 그리고 내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 조건하에서 국회도 비상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거의 공론장은 후보자 상호 간에 그리고 후보자와 유권자, 국민 사이에 활발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적극적인 토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선거 공론장에 사법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당선된 대통령의 명백한 허위사실공표, 예를 들면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남한테 손해 입힌 적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오히려 손해 봤다' 이런 명백한 거짓말들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안 하면서 낙선한 야당 후보의 자기방어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기소를 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후보자의 발언을 최대한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조회대 대법원, 어떻게 했습니까? 2심 법원이 짜맞추기식의 이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반박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한다고 하는 기준의 판례에 맞춰서 무죄 판결했습니다. 그것을 통상적인 절차와 판례를 전부 무시하면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검찰권과 사법권이 과반 지지율 야당 대선후보의 대선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공모했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국민들이 과

### 연 거둘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 행위 유형 삭제에 대해서 제가 2022년 국정감사에서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선관위 답변도 있었고 지난 선관위원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논의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특히 행위 유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서 언론의 검증 그리고 국민들의 검증 과정에 맡길 정치의 영역을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관심법의 영역에 내어 주는 악법이다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저의 의견은 행위 유형만이 아니라 사실 허위사실공표죄 전체를 삭제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다만 전체를 삭제하는 것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 두되 문제가 가장 심각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는 저는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에서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말 많이 비판하고 지금도 비판하지만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유형을 적용해서 이재명 전 대표와 똑같이 수사해서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위 유형은 삭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 구성요건이 불명확합니다. 당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가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려고 하는 고도의 목적성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고도의 당선 목적이라고 하는 고의성을 어떻게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행위자 자신이 공표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것을 외부에서 어떻게 100% 확신하고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례에서 보듯이 국토부의 협박이라는 것이 사실에 관한 발언인지 행위자의 의견인지 조차 객관적 기준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행위 유형의 허위사실공표죄의 이런 특징 때문에 정치에 개입하고자 하는 검사와 사법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범죄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위헌성이 다분하고 빠르게 개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다수 국가들이 허위사실공표죄 자체를 선거법에 규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선거의 공론장을 사법의 불순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행위 유형의 허위사실공표죄, 즉각 폐지하고 정치 검사 그리고 정치 판사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하는 상식적인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 법안을 오늘 처리하는 것에 동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살인, 사기에 대해서 거짓말한 건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살인과 사기에 대한 전과가 있고 그 전과를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면 당연히 처벌이 되지요. 행위 유형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것이 이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부디 우리가 의견은 다를지라도 사실을 호도해 가면서 이 논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사무총장님, 평생을 법관으로 보내셨는데 지금은 사무총장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우리 헌법에 삼권분립이나 법치주의의 원칙들이 명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은 결국 사법부의 결정이나 판결에 대한 존중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걸 천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만희 위원 만약에 지금 우리 행안위에서 다루고 있는 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반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그 처벌규정이 과도한 것이라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입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에 면소판결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이재명의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면소판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게 됩니다.

○이만희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절차적이든 실체적이든 고려 없이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러니까 지금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이 행위의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이 불명확한 개념을 뭔가 정리하기 위한 취지라면 입법적·반성적 고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시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지금 문제의 전체 단계가 과거에 만들어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만희 위원 조금 정리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과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반성적 고려에서 철폐하는 것이라면 면소가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문제가 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아마 대법원 판결도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겁니까?

첫째는 출장 중에 이분이 골프를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골프를 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렇지요? 발언은 어떤지 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만희 위원 이재명 후보의 골프와 관련된 발언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국민의힘에서 4명의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의 맥락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골프를 해외

출장 중에 안 쳤다 이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것 이게 허위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백현동 관련해서는 어떻게 법원이 판시하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제가 지금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내용을……

○**이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만희 위원** 왜 적절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된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잘못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니, 저는 공직선거법의……

○**이만희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이것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마치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4단계 상향을 췄다 이런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도표까지 그려져 있는 걸 갖고 나와 있어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지만 설정은 어떻습니까? 아니지요. 국토부 때문에 상향해 준 거 아니지요. 김인섭이라는 사람 때문에 상향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2006년도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그분, 김인섭 씨, 왜 거기에 자기들이 로비를 하고 저걸 하겠습니까? 왜? 70억 받아먹었어요. 함바식당 운영권 받아먹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후보가 한꺼번에 4단계나 용도지역을 상향한 것은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라 김인섭의 로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어요.

이런 허위사실을 유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처벌하지 않고 둬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행위, 지나간 행위를 대법원에 의해서 유죄판결을 받게 될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면소시키려고 이것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저는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일단 허위사실공표죄 250조 제1항은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이재명 후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출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뭘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나의 기억, 나의 의견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을 클리어하게 가져가자는 문제이지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선거법이라는 게 규정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법은 애매모호한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출마하셔서 실제 선거운동 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매한 규정을, 계속 위헌 논란이 있는 규정을 이번 기회에 차근차근 정확한 규정으로 바꿔 내자 이 취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지난 5월 1일 날 대법원 판결은 이 우려를 저는 극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여러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나 선거 자유의 보장이 굉장히 중요해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두지 않거나 두더라도 굉장히 명확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사무총장께서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아시겠지요, 외국의 사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많이는 모릅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에서 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미국 거는 아시겠지요? 없습니다. 일부 주에서만 관련 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주 법률들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도 캐나다 선거법 제91조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나 예상 후보자의 시민권, 출생지, 교육, 전문자격 등에 대한 허위진술을 금지하고 있지 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은 직업, 경력, 정당, 기타 단체 소속, 정당후보자 신고, 타인, 정당 기타 단체의 추천이나 지지 이걸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국민대표법에는 후보의 인격과 품행에 관한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인격과 품행은 인격 또는 인품과 관련된 진술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은 그 보호 범위에서 제외하여 표현의 자유 보장과의 균형을 도모해서 영국에서 이 조항이 입법화된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위 조항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는 한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모호한 그리고 기억과 의견에 기대어 있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거는 이제 좀 선거법에서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몇 분 위원들께서 ‘그러면 사기 치면 그것도 다 상쇄가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기 치면 사기죄로 처벌받겠지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후보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별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견과 기억에 관련해서는 저는 백현동 문제는 너무나 가슴에 와닿아요. 제가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기침만 해도, 여기 구청장이나 단체장 하셨던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기침만 해도 지역은 얼어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승환 위원 제가 중앙에서 보니까 안 얼어붙더라고요.

○박정현 위원 제 발언입니다, 조승환 위원님.

그래서 저는 분명 이 법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야당의 대통령후보, 그것도 지지율 1위의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주권자 국민이 지금 선택했습니다. 그런저런 내용들을 다 알고도 당 후보로 지지율 88.77% 나왔고요. 지금도 거의 40% 후반에서 50% 초반의 일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국민의 선택권을 이 모호한 규정에 의해서 제한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헌법 제1조 2항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공선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박정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제 발언에 대해서 논평하지 마시고요, 들어 보셔요.

○조승환 위원 논평이 아니고요. 그냥 현상에 대해서 지자체가 중앙부처에서 기침만 하면 뭐라고 표현하셨는데……

○박정현 위원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제 시간입니다.

○박정현 위원 저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조승환 위원 제가 중앙에서 이야기를 해 보면 지역 국회의원 끼고 지자체장, 지자체 공무원들 꼴짝도 않습니다. 그렇게 국민들한테 중앙과 지방이 마치 이렇게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중앙에 계셨으니까 모르시지요. 저는 지역에서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만 가지고서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하시는데 이것은 연관성상 1심, 2심까지의 연판, 선거재판이라는 것은 신속 재판이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지금 6·3·3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유권자의 판단을 위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기자간담회에서의 말씀 한번 들어 보시자고요.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2007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법에 따라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위법을 해서 재판을 하고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야 되는 게 사실 삼권분립이나 사법부 독립이나 이런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법부의 정치화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번 입법이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위인설법이다라는 거를 스스로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라는 생각을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위가 뭐냐, 의견이냐 판단이냐 행동이냐, 아까 사기죄 살인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알리바이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처벌할 수가 없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다, 안 만났다, 거짓말 해도 되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모르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리고 표현의 자유, 선거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사실 모든 기준은 국민의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게 국민의 판단을 전제로 해서 국민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허위사실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선거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법부의 자체, 최소화,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사법에 개입할 수, 법을 만들 수 있겠지요, 입법부에서. 그건 법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불가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시기와 절차의 부분입니다. 꼭 지금 해야 됩니까? 꼭 대선 앞두고, 아까 국민의힘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미 재판부에서 한 달 뒤로 넘겼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이 법을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 지금 극단적인 표현들이 나와서 그러는데 딥페이크로 동영상 돌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공선법에 의해서는 처벌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선거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을 해 낼 것이냐 이런 부분

들에 대한 고민, 토론,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행위가 모호하다, 빼자 이렇게 해서 그냥 빼 버리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역사를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을 개정하는 경우는 기존에 처벌하고 있는 형법 조항이 불합리하거나 처벌이 과도하다는 반성적 고려, 또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기존의 형법 규정이 포섭하지 못했을 경우에 개정하고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양부남 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모든 허위사실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은 열거주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시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양부남 위원 예시가 아니고 열거로 해석한 이유는 우리 형법의 원칙에 유추해석 금지, 확장해석 금지, 명확성의 원칙, 과잉처벌 금지 원칙의 해석상 당연히 열거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출생지, 신분, 가족, 경력은 별다른 해석이 필요 없지요. 그렇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양부남 위원 해석 안 해도 다 압니다, 누구나. 그런데 행위에 대해서는 아리송하다 말입니다. 내가 밥을 먹는 것도 행위고 오늘 행안위에서 질의한 것도 행위고 여행 간 것도 행위다, 그래서 대법원은 행위에 대해서 판례로 유권해석을 했지요. 뭐라고? 행위 중에서 후보자의 자질, 능력, 이런 것에 한해서 유권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례가 해석을 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양부남 위원 왜 판례가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행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이 행위의 개념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과도하게 법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이론이 있고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해석이 필요 없었지만 행위에 대해서는 판례가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행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자명한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이 있다, 불확정적이 다 그 요소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양부남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주장하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자의적·선택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행위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배경이 됐던 것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다만 다른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법

원이 일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확정 개념으로 볼 수 있어도 법원이 일정한 부분에서 해석 기준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확정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양부남 위원** 좋습니다.

모든 법률의 마지막 유권해석은 법원에서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또한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 개념의 불명확성 때문에 수사기관의 불신, 법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법정책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되든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우리 법체계에 어긋난다거나 사법체계에 반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제가 2023년도에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 현재 결정문을 확실하게 다 안 읽어 보기는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행위의 불확정 개념도 현재의 결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위 자체가 들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안 한 것으로 봐서는 그와 같은 일정한 소위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허위사실, 그런 언행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게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고려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행위를 삭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부남 위원**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법이라는 게 기준의 조항이 지고지순한 것도 아니고 여론을 반영해서 얼마든지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작용된 거 아니냐는 많은 의문이 제기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유권해석은 법원이 하지만 법원도 역시 상황에 따라서 그런 판단을 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데 과연 이 바꾸는 것이 정의에 반하냐 이겁니다. 우리 총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연 이렇게 바꾸는 게 정의에 반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입법사항입니다.

○**양부남 위원** 저는 입법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입법사항은 맞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부남 위원** 중립적이고 무가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법의 개정은 중립적이고 무가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법 조항의 취지, 선거의 공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겠느냐만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부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께서 토론다운 토론을 해 주셔서 제가 조금 위안을 느낍니다.

총장님, 법률 개념 중에서 해석의 여지없이 똑 부러지는 부분도 있지만 해석이라든지 애매한 개념도 술하게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맞습니다.

○주호영 위원 다만 형법 조항에 있어서만은 명확성의 원칙 때문에 명백히 명확성에 반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주호영 위원 이 조항도 문제가 되어서 현재와 대법원에서 다 이미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행위라는 표현을 자질, 성품, 능력 등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한정해서 해석하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렇게 명확히 했지 않습니까?

형법 1조 2항인가요, 행위시법에 의한다는 조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주호영 위원 그게 우리 배울 때하고 바뀌었어요. 그것 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제가 오늘 형법총론 교과서를 다 구해서 봤어요. 우리 배울 때하고 양 위원님 배울 때하고는 어떤지 모르는데 소위 의도설이라 그래서 기존의 입법정책 변경이라든지 처벌이 부당했다는 그걸로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면소.

○주호영 위원 면소하고 하는 그 규정 자체가 바뀌어서 개정되면 무조건 면소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사회 상황이나 그게 바뀌어서 하는 경우 면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것도 무조건 면소로 되어 있어요. 면소로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하는 것으로 돼서 교과서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이 통과되면 법리적으로 이 조항에 의하면 행위에 대한 혀위가 문제되는 것은 모두 이론적으로 면소판결해야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러니까 지금 바뀌었다는 교과서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주호영 위원 하여튼 바뀌었다는 것은 둘째 하고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면소 맞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기존의 처벌이 맞지 않다든지 하는 입법적 고려에서 개정된 거는 면소하라는 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기존 재판 계류 중인 건 다 면소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위원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면소판결을 해야 되는 거지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주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재판 진행 중인 게 몇 건쯤 되나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정확하게 제가……
- **주호영 위원** 큰 선거 한번 치를 때마다 지방선거라든지 혹은 총선이라든지 대선 치를 때 허위사실 유포로 대략 몇 건쯤 처벌 나오나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최근 5년간 여러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호영 위원** 그런 게 다 면소되는 거지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이미 확정된 사건까지요?
- **주호영 위원** 확정된 것 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확정된 거는 면소의 효력의 범위에서 벗어나니까……
- **주호영 위원** 그렇지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지금 확정 안 된 사건은 전부 면소입니다.
- **주호영 위원** 그렇게 되면 선거 과정에서 행위에 관해서는 어떤 거짓말을 하더라도 처벌할 방법이 없지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행위 개념이 삭제되는 경우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주호영 위원** 그렇지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마타도어를 단속하거나 처벌되어야 될 대상의 제일 위에 늘 올려서 알리고 있고 홍보를 하고 그랬지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 **주호영 위원** 선거의 혼탁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 **주호영 위원**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과거 언행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정직도를 보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많지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 **주호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조항이 폐지되고 나면 그런 점에 관해서 거짓말했어도 처벌할 수 없고 선거는 엄청나게 혼탁하게 될 것이지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런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 **주호영 위원** 외국에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나라도 있고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벌하지 않는 나라들은 정치인이 거짓말을 한 번 하다가 문제되면 거의 정치생명이 끊길 정도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주호영 위원** 대부분 그렇습니다. 선거에서의 거짓말 이런 것들이 사법 처리까지 가기

전에 그 자체로서 정치인의 부정직성 이런 것들은 배제되는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절차로까지 가지 않는 것이고 처벌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어느 나라는 선거에 있어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사회윤리적인 것으로 처벌하든 정치 도의 상 처벌하든 법률로 처벌하든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입법정책적인 문제라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위원 이 법이 통과되면 자기가 전혀 관계없는 어느 다리를 내가 예산 따서 놓았다고 이야기해도 처벌 안 받는 거지요, 행위에 관한 것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와 같은 내용은 개인의 업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개인적인 품행이나 자질 그런 능력보다도 경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경력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경력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그러니까 업무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을 행위 개념으로 지금 파악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호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면 이번 대선에서도 단속 기준을 다 바꿔야 되고 어느 행위까지 단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정한 바도 없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만약, 그러니까.....

○주호영 위원 당장 선거운동이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후보자 등록일 마감, 그러니까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12일부터, 그러니까 10·11일 다음 12일부터 진행됩니다.

○주호영 위원 선거에 있어서 단속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선거운동 불과 며칠 전까지 못 정한 경우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 돼서 선거기간 중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할 필요는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주호영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정치인들이 거짓말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조항이 통과되고 나면 그것을 단속하거나 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인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주호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총장님 판사 출신이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해식 위원**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이 신속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전광석화처럼 과기환송을 했는데 정작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 2023년도를 보면 대법원에서는 평균 1건 처리하는 데 73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난 뒤부터는 2024년 경우에 92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과기환송은 36일 만이었어요, 대법원에 올라온 이후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소부에 배당을 하고 2시간 만에 전합에 회부해 가지고 단 9일 만에 처리를 했습니다. 왜 이재명 판결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선거기간 중인데, 물론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은 아니었지만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결정된 이후였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현법기관의 그 결정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좋습니다.

고등법원이 말이지요, 과기환송하고 난 다음에 고등법원이 바로 하루 만에 배당을 했어요, 7부에다가. 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해식 위원** 그리고 재판 서류 송달을 보통은 우편 송달을 하는데 집행관 송달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연기가 됐습니다, 6월 18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절로 연기가 됐나?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판사 사회 내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있고 기고를 하고 있고 국민적인 비판이 쏟아지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의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총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역시 마찬가지로 재판부의 전권 사항인 소송지휘권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이해식 위원** 선거법 250조 1항 거기의 ‘행위’를 삭제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오랜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삭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 제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그리고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약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검찰권을 남용해서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선택적으로 정치 보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그때부터 제기됐어요. 이미 ‘인격’이라고 하는 법문을, 규정을 삭제할 때도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재명 재판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판사 출신이시니까…… 이 1심에서 말이에요, 징역형을 때렸습니다. 방송토론에 나와 가지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이유로 징역형을 때리는 것은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항소심은, 저도 물론 법정에서 다 지켜봤지만 최근 판례까지 들어 가면서 매우 신중한

판결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 9일 만에 두 차례 심리하고 사실판단까지 하면서…… 그리고 저도 읽어 봤습니다마는 다수의 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신속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건 처리의 신속을 강조했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2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족한 판결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심 판결을 베껴 쓴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는데 10명이 찬성을 했는데 1심, 2심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족한 판결이다, 이게 대법 판결로 타당한 거예요? 이게 정치 보복이고 정치 판결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을 삭제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쭉 있어 왔는데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 내외 비판 그리고 오늘 주호영 위원님이나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그런 논리도 계속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정치 보복적인 그런 적용을 사법부가 대선을 앞두고, 이제 조금 있으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이 순간에도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이 문제 때문에……

저는 이것은 사법부가 이런 여건을 조성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총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법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왈가왈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채현일 위원 사무총장님, 법이라는 것은 시대정신을 담아야 하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현일 위원 그래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맞습니다.

○채현일 위원 이 법이 만들어질 때의 경위를 좀 알고 계시나요? 이 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통합……

○채현일 위원 예전에 이회창 전 대선후보 아들 병역 비리가 문제될 때, 아마 그때 이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진 민주국가에서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죄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시는 것 있어요, 입법례나 이런 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행위라고 딱 특정 짓지는 않았지만 일부 뭐 영

국에서도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채현일 위원** 영국 같은 경우 사례로 했는데 여기에서도 유사한, 품행이라고 해 가지고 허위사실공표죄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사문화됐어요. 왜 그러냐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가 너무 논란이 돼 가지고, 거기는 또 관습법이잖아요. 불문법이잖아요. 그런 정도로 있는데, 100년 동안 딱 1건 유죄판결이 났습니다, 과거에. 그만큼……

그러면 지금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허위사실에서는 형사적인 처벌이 아니라 비형사적인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사 아니면 정정보도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정치적인 비판. 그러니까 이것은 만들어질 때부터 태생이 잘못된 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법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그게 잔존하다 보니까 검찰과 법원의 사법의 정치화 또 표적수사 기소의 악용이 되고 있다. 왜? 행위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같은 경우는 명확하잖아요, 판단이 가능하지만. 행위라는 것에는 사실과 해석, 주관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해악이 커요. 왜? 표현의 자유를 저희가…… 지금 공직선거법의 방향이 돈은 뮤고 입은 풀다는 기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선거운동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규제는 예외로 한다 그런 건데 이게 그 시대적인 방향하고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학계에서도 또 현재 판례 내용에서도 이런 논란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법은 삭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치권이나 국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빠르게 안 됐고요.

그런데 왜 지금이냐 너무나 큰 대선에 다가와서…… 또 중요한 민주주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계엄부터 해 가지고. 그 상황에서 지귀연 판사가, 심우정 총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주 돌출적인 정치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적인 여론이 이것은 안 되겠다, 허위사실유포죄 지금이라도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공론화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입법적 실패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행위 개념을 전부 삭제했을 때 벌어지는 부분은 결국 후보자의 거짓말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종전의 행위 개념에 대해서 법원이 설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서 규정하던 것을 완전히 풀게 됐을 때 과연 유권자의 선택이, 즉 선거의 공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선관위는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입법적으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채현일 위원**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논란이 없었거나 국민들한테 수용 가능한 측면이라면 이 법안 폐지 논란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십수 년 동안 계속 그런 게 논란이 되었고 정치적으로 악용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면에서 그게 사회적·정치적으로 나라 국난 수준으로 피해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기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채현일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돈은 뮤고 입은 푸다라는 이 선거법, 특히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허위사실유포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향을 좀 해야 되고 이번에 이렇게 넣은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저는 봅니다. 늦었지만 지금 빨리해서 이런 혼선, 특히 사법의 정치화,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 그것의 가장 이유가 허위사실유포죄라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대체토론하시겠다는……

○정춘생 위원 예.

○이달희 위원 저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이달희 위원님도 하시겠다는……

○이달희 위원 예, 못 해서……

○위원장대리 윤건영 그러면 정춘생 위원님 하시고 이달희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달희 위원 예.

○위성곤 위원 저도 할게요.

○정춘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당선에 이르게 하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이런 부분을 쳐벌하려고 만든 죄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지금 250조에……

○정춘생 위원 그런데 이 죄가 낙선자에게 적용이 돼서 최종적으로 유죄판결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낙선자·당선자 가리지 않고 처벌을 한 예가 있습니다. 가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낙선자에 대해서 처벌한 사례가 몇 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생각보다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면 그 비중을 물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관련해서 ‘내 아내는 손해만 보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모친과 함께 23억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거짓말과 ‘기억이 없다. 김문기 나는 잘 모르겠어’, 이 기억에 대한 판단, 모른다 한 것과 범죄의 비중이 어디가 더 높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형의……

○**정춘생 위원** 그래서 이 법조항이 낙선자에 대해서 명백한 정치 보복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악용……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리고 감정에 대해서,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가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압박이 아니다…… 이런 감정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리고 명백한 정치 보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논의의 문제가 된다는 부분은 선관위도 수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대체 필요한지, 완전히 행위의 개념을 들어냈을 때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봐 그 점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사법부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까 채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귀연 판사는 형사소송법을 어겨 가면서, 위배하면서 윤석열을 풀어 줬습니다. 날로 계산해 오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한번 적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가 빗발치고 국민적 저항이 거세니까 원래가 맞다 되돌렸어요. 그러면 다시 구속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무죄선고, 1심과 2심이 명확하게 다르다면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지요. 그런데 불과 이를 만에 7만 쪽에 가까운 분량을 읽는다고요?

하나도 검토 없이 이런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유죄 취지로 되돌려 보내기 때문에, 저 사법부는 절대 공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못하구나라는 국민적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봤는지 로그 기록을 공개 청구하는 게 이를 만에 100만이 넘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 공직선거법 때문에 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정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울러서 지금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이 아직도 뼈리를 틀고 계속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선 끝나고 정기국회 내에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께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민주주의 체제가 불신당하고 체제 위협을 받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마지막으로 위성곤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이달희 위원님……

○**위원장대리 윤건영** 이달희 위원님 하시고 위성곤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하십시오.

○**이달희 위원** 먼저 하시지요.

○**위성곤 위원** 순서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먼저 하시지요.

○**이달희 위원**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평생, 거의 한 30년 가까이 선거와 살았던 그런 의원 입장에서 총장님에게 몇 마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선거사무 중에 우리가 가장 두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체킹을 많이 하는 게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정말 후보자들의 공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잘못해서…… 간담회에서도 녹취를 당해서 내가 허위사실을 발설하면 다 떨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염중하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리했을 겁니다.

선거에서 허위사실유포는 정말 중요하게 그동안 다루어졌고 그 법에 지금 위원님들이 다 열거하셨듯이 정리가 명확하게 돼 있는 이유도 그런 허위사실유포 때문에 당락이 좌우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직에 있을 때 국회에 온 경험이 있습니다. 야당의 대표께서 단식을 하신다고 해서 정말 어떻게 하시나 보니까 출퇴근 단식을 하신대요. 한 20일 동안 해서 정말 몰골이, 곧 쓰러질 듯한 모습으로 법원의 판결, 선고하는 그런 자리를 피해 가셨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 모양 빠진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습니다.

윤미향 사건에서도 그렇고, 그분이 나중에 대법원에서 결국 유죄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4년을 다 채우고 유죄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민 정서가 선거법에 대해서는 6·3·3을 지키자. 1심 6개월, 고등법원 3개월, 대법원 3개월, 1년 안에 선거법 위반한 사람들은 정리해서 보내고 제대로 된 선량들이 이 나라 일할 수 있게 하자. 6·3·3을 선거법 제270조에 명시까지 해 두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이재명 대표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짧게…… 1심은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이재명 대표님 며칠 전에 영주도 갔는데 송달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대통령 될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급하게 신속하게 ‘명확해야 된다’ 하면서 ‘모호한 법을 없애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내판이 모호하면 없애야 됩니까? 고쳐야지요.

그리고 축구할 때……

총장님, 축구 좋아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달희 위원** 축구하는데, 스타가 골을 넣으려고 하는데 골대가 너무 멀면 번쩍 들어서 그 스타 앞에 골대를 갖다 놔야 됩니까?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축구하는 과정에 그 골대를 들고 이재명 대표님 앞에 얼른 갖다 놓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명확성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오늘은 고등법원에서도 선고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은 통과시키지 말고 대통령선거 끝나고 토론을 해서, 정말 민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날을 잡아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토론해서 이 법을 다시…… 고동진 의원님도 상세 법을 내놨는데 병합심리해서 우리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절차 밟아서 이 법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위성곤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는 정치적 주장이나 평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위성곤 위원 예를 들어서 정책 추진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평가 발언이 사후에 허위로 판단되면 곧바로 처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다만 목적범이니까 내심의 의사나 이런 부분을 전부 종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성곤 위원 목적에 대한 판단과 행위 사실에 대한 판단, 사실인지 아니면 그게 의견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러니까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요소들은 있다, 무조건 처벌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그 조절의 범위가 맡겨진 게 사실 검찰의 손에 기소권으로 맡겨져 있고 그리고 판사에 의해서 맡겨져 있는 거지요. 이번 이재명 재판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보입니다. 사실적 행위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까지 판단을 법원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이 문제라고 보입니다.

또한 형법상 이미 명예훼손죄나 아니면 공직선거법상의 후보비방죄도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위성곤 위원 사실 그러한 법률로도 많은 부분들을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건 대부분 2항에 관련한, 낙선 목적에 관련한 부분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1항은 대개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케를 조금 달리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케를 달리할 수 있지만 이 자의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행위 조항에 대한 개념의 문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치적 과정에서 후보자의 각종 행동. 그러니까 정책 추진, 의정활동, 사적 언행.

지난 21대 이규민 의원이 의원직 박탈을 당했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유죄를 받아서 박탈을 당했는데 뭐였냐면 고속도로냐 자동차전용도로냐라는 얘기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의원직을 박탈시켜 버렸어요.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오해를 통해서 그런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전문가가 아니면 자동차도로인지 고속도로인지 잘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행위를, 발언을 의정보고서에 기재했다고 해서 의원직을 박탈시켜서 지

금 출마도 못 하고 있는. 그래서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고 자의적 판단, 그런데 그 자의적 판단이 검찰권을 가진, 기소권을 가진 자가 행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이 행위에 있어서, 지금 농해수위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의원님 한 분인데요, 그분은 무엇으로 기소를 당했느냐면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에 경로당에 가서 ‘예쁘게 봐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2심까지 가서 면소판결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바로 이 행위 조항이라는 겁니다. 이런 최소한의 의사표현을,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까지도 막고 있는.

그래서 국제적으로 보면, 국제인권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정치적 발언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위성곤 위원** 실제 그러한 것들이 의원직을 박탈시키거나 의정활동을 못 하게 할 정도의 범주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 법조항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검사와 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의 삭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 질의 정정할 게 있어 가지고요, 한 가지만.

30초면 됩니다.

○**위원장 신정훈**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 제가 낙선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느냐 질의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당선무효형을 받은 적 있느냐를 살펴보시고요.

2020년 이후의 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감사합니다.

○**박수민 위원** 저도 30초만 좀 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저도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위원님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도가 불명확하면 지도를 태워 버리는 게 아니라 지도를 좀 정확히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위라는 개념이 모호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걸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행위라는 조항 자체를 없애는 것, 이것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법 개정 명확히 반대하고요.

저희가 어떤 경우에 어떠어떠한 사람의 이름, 그분과 관련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법이 개정될 때 누구누구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토론 들어 보면 결국 이 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 법 개정의 배경으로 기일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법은 이재명후보법으로 저희가 속칭으로도 부를 수 있게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반대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죄송합니다. 제가 끝나는 줄 알고……

지금 축조 해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250조 1항만 삭제 법안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에 대해서도 행위라는 개념이 설정돼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 조항인 110조의2에 대해서도 행위라는 개념이 같이 설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정합성을 따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250조 1항에서 행위를 빼는 경우에는 110조와 110조의2의 행위도 같이 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도 금지조항으로 넣어 놓고 또 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인지 진실인지를 판단해서 공표하도록 돼 있는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위원장 신정훈 예, 그건 축조심사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위원장 신정훈 우선 모경종 위원님, 30초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모경종 위원 저도 대체토론 잘 들었습니다. 방금 박수민 위원님이 지도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태우면 안 된다, 정확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단 지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행위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예전부터 논란이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논란이 있음에 다들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삭제한다 그리고 고동진 위원님이나 박수민 위원님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하는 여러 가지 대체토론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송달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있다라는 말은 염연히 잘못된 팩트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요,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중의적인 표현도 들어가 있고 순간순간 생략되는 단어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행위’를 꼭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체토론이 끝나면 안건을 소위에 회부해서 심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만 이 법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의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개정 사항을 담고 있어서 전체 위원님들의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전체회의에서 바로 축조심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승환 위원 반대합니다.

○이달희 위원 반대합니다.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은 그 절차상의 문제나 내용상의 문제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나가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죄송합니다. 저희는 절차에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조승환 위원** 법안심사소위 보내 주십시오.

○**윤건영 위원** 진행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민 위원** 이의가 꽤 있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배부해 드린 축조심사 자료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전문위원 보고 및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이미 대체토론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오갔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의 대상 중에서 ‘행위’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허위사실공표 대상 범위는 94년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2000년 법 개정으로 ‘행위’가 추가되었으며 이는 다른 허위사실 대상인 개념들에 비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현법재판소 판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규제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동 죄의 입법 목적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화 여부는 자의적 법 해석 방지와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성, 선거의 공정성을 염격히 보장할 필요성과 현재 우리의 정치문화 및 국민 일반의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데 조금 전에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위’라는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와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에도 있기 때문에 법체계 통일성을 위해서 이 부분도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완전히 행위만을 삭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축조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조심사가 끝난 법률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하신 위원님들에 한해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정부 측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모든 토론을 마쳤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률안 의결을 마쳤습니다.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관위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후속 사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마치기 전에 잠깐 선관위 사무총장께 간단히 한두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 서울고법의 기일 연기 조치로 인해 가지고 서울고법의 건은 선거기간 내에 후보자가 재판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잠깐만요, 공직선거법 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안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들으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위원장 신정훈** 대통령후보자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지방의원 후보자에 대한 선거기간 내에 부당한 공권력의, 소위 말해서 체포라든가 구금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공정성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는 것 충분히 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위원장 신정훈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사형, 무기,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구속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의 규정을 굉장히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선관위가, 아직도 대장동 관련 재판 과정이 6월 3일 포함해 가지고 선거운동기간 내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중앙선관위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 입장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오늘 오전에 언론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 사법부에 대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 양쪽 헌법기관이 충돌하는 그런 모양새보다도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자제하고 존중하는 것이 맞다는 전제조건은 있습니다. 다만 재판권 행사와 관련한 부분이라 조심스러운 점 또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위원장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그리고 두 번째로요, 지금 김현 의원 등이 선관위에 질의하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현행 선거법에 의해 선거사무소 설치가 국회의원선거구로 되지 않음으로써 선거구별로 설치되지 않는 선거사무실 때문에 선거운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하는 문제가 제가 여러 가지 법조문을 가지고 선관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 법률 개정안 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시지 않았던가요?

○위원장 신정훈 법률 개정안은 제출했지만 현재의 규정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 현재의 규정으로요?

○위원장 신정훈 예, 현재의 규정으로도 선거운동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관위 결정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그 문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 ○출석 위원(20인)

고동진 김성희 모경종 박수민 박정현 서범수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해식 정춘생 조승환 주호영 채현일 한병도

○첨가 위원(1인)

이광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 조문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